# 2021학년도 졸업생 표창 사정 계획

**지축초등학교**

## 1 목 적

성적 위주의 시상 방법에서 벗어나 아동들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분야별 다양한 시상제도를 도입하여 학생들에게 꿈과 자신감을 갖도록 하고, 졸업예정자에 대한 표창 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표창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방 침

1. 본 규정은 **2021학년도 30회 졸업생의 포상**을 위한 자료로 작성 시행한다.
2. 시상은 표창장(졸업생 전체)과 공로상(해당학생)을 수여하며, 대외상은 수상하지 않는다.
3. 사정 위원회 구성은 **교감, 6학년 담임교사 4명, 6학년 학부모 대표 1명으**로 한다.

## 3 수상대상자 선정기준

**1. 표창장**

가. 본교 재학 중 학교생활에서 그 능력이 우수하거나 관심을 갖고 성실히 참여한 분야를 선정한다.
나. 졸업생 전체 어린이를 대상으로 1인 1상을 수여한다.
다. 표창의 종류 및 분야(인성 덕목 및 개인의 재능과 소질 분야)로 추천한다.
라. 분야별 표창 후보자 추천 기준(하단 참조)

| 부 문 | 추 천 기 준 |
|---|---|
| **독서문학** | -평소 독서에 취미가 있거나 다독 기록이 있는 학생<br>-독후감 대회에 입상하거나, 독서장제에서 금장, 은장, 동장을 받은 학생. |
| **민주시민** | -학교 및 학급 자치회 회장, 부회장으로 활동한 학생<br>-학교 내 각종 동아리 및 학급 내 모둠 활동 시 리더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 학생 |
| **자기관리** | -개인 포트폴리오 정리가 우수하고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br>-학급회의에서 반 친구들에게 근면·성실하게 생활한 학생으로 선정된 학생 |
| **건강체육** | -체육 분야에 열정이 있거나 관련 대회에 입상, 참가 경력이 있는 학생<br>-PAPS 체력 급수가 높은 학생, 스포츠클럽 활동 시 모범이 되는 학생 |
| **창의사고** | -수학·과학 분야에 열정이 있거나 관련 대회 입상, 참가 경력이 있는 학생<br>-만들기나 컴퓨터 등에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한 학생<br>-탐구 및 수리능력이 뛰어나고 창의적인 활동과 결과물을 제작하는 등 수학·과학 수업 활동에 모범이 된 학생<br>-글쓰기와 모둠활동 기획에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참여 의지를 보인 학생 |
| **문화예술** | -음악, 미술, 신체표현, 창작활동 등 예능 분야에 열정이 있거나 관련 대회에 입상, 참가 경력이 있는 학생<br>-문화예술 관련 재능을 키우기 위해 예술 관련 자율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한 학생 |
| **친구사랑** | -학급회의에서 평소에 친구에 대한 이해심이 많고 교우 관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한 학생으로 추천받은 학생<br>-또래중재 활동의 경험이 있고 타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경청하는 태도를 지닌 학생 |
| **공동체** | -지역, 국가, 세계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br>-NGO활동 및 기부 활동, 학교 캠페인(청소년단체 봉사활동 등) 활동에 성실히 참여한 학생<br>-학급 내 봉사 활동 및 1인 1역 활동에 솔선수범한 학생 |

**2. 공로상 표창**

가. 대상
(1) 본교 재학 중 1,2학기 학생회 임원으로 활동한 학생 (6학년 학생회 회장/ 6학년 학생회 부회장)
(2) 6학년 도서도우미, 방송부원 중 꾸준히 활동한 학생으로 담당 교사가 추천한 학생
(3) 교육청 주관 대회에서 교육감 이상 훈격으로 상을 받은 학생
나. 공로상 시상은 졸업식 전에 개별 수여 한다.

## 4 장학금 수여 선정기준

1. 장학금 대상자가 지정되지 않은 일반 기탁인 경우에는 본교 장학금 선정 기준에 따라 장학금 후보자 순위를 정하여 장학금 접수 및 기탁 순서에 따라 순번에 따라 지급한다.
2. 당해년도에 다른 기관 및 기타 단체의 장학금을 받은 기수상자는 제외한다.
3. 모든 장학금은 기탁자에게 학교장이 위임을 받아 교장실에서 별도로 전달한다.
4. 접수된 금액을 같은 순위의 경우 동등한 비율로 나누어 준다.
5. 장학금 대상자가 지정되는 기탁인 경우에는 대상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한다.
6. 장학금 선정 기준

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가-1. 소년소녀 가장

가-2. 한부모 가정, 조손학생

가-3. 다자녀(세자녀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자녀가 많은 순서로 순위를 정함.)

- 중복이 될 경우 학생생활을 참고하여 장학금 선정관리위원회에서 순위를 결정한다.

나. 차상위 가정(120%)이하

나-1. 소년소녀 가장

나-2. 한부모 가정, 조손학생

나-3. 다자녀(세자녀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자녀가 많은 순서로 순위를 정함.)

- 차상위 가정에서의 순위 선정은 기준 중위소득이 낮은 순서로 결정한다.

다. 국가유공 보훈 대상자(친부모에 한함)

라. 담임교사의 추천에 의한 대상자

- 교육비지원을 신청하지 않아 법적 증명이 되지 않는 학생 중 담임교사가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위의 기준을 고려하여 별도의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6. 기탁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1인당 장학금의 수여 금액은 10만원으로 한다.
7. 위의 선정 기준에 해당되는 학생이 없는 경우 장학금을 기탁받지 않는다.